아산문화재단 재무감사 결과보고

감사위원회

Ⅰ. 개 요

❑ 실시근거

❍ 『아산시 자체감사 규칙』 제2조(적용범위)

❍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감독 등)

❑ 감사개요

❍ 감사대상: 아산문화재단

- 관련부서: 문화관광과, 공원녹지과, 문화유산과

❍ 감사기간: 2021. 1. 25. ~ 2. 5.

❍ 감사범위: 2019. 1. 1. ~ 2020. 12. 31.

❍ 감사인원: 회계감사팀장 등 3명

❑ 감사방향

❍ 지적 위주의 감사를 탈피하고 제도개선 위주 감사

Ⅱ. 감 사 결 과

▣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table>
<tr><th colspan="3">합 계</th><th rowspan="2">변상명령
(금액)</th><th rowspan="2">징계
(인원)</th><th colspan="2" rowspan="2">시정
(금액, 인원)</th><th rowspan="2">주의
(인원)</th></tr>
<tr><th>건수</th><th>금액</th><th>인원</th></tr>
<tr><td>10</td><td>-</td><td>-</td><td>-</td><td>-</td><td colspan="2">2</td><td>8</td></tr>
<tr><td colspan="3" rowspan="2"></td><td>개선</td><td>권고</td><td>통보</td><td>고발
(인원)</td><td>현지조치</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Ⅲ. 감사결과 처분 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연번	제 목	처분요구 종류	금 액 (인원)	비고
계	10건	시 정 2 주 의 8	-	
1	물품구매 계약심사 미이행	주의		
2	위탁사업 협약(계약) 체결 소홀	주의 (3건)		
3	장애인 중심 생활문화센터 시설 확충 보조사업 계약관리 소홀	주의 (2건)		
4	배방생활문화센터 대관 사용료 징수 근거 미흡	시정		
5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관리 소홀	주의		
6	도급계약 지역개발채권 징구 부적정	주의		
7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부적정	시정		

2. 현지처분사항: 해당없음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물품구매 계약심사 미이행

【부 서 명】 문화관광과

【관계기관】 아산문화재단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2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표1]

계약일	거래처명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금액	계약심사 이행여부
2020.12.15	◎◎◎	<제2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 사무용 가구 구입	1인 수의	21,900천원	부
2020.12.15	(주)▲▲▲▲	<제2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 사무기기 구입	1인 수의	31,844천원	부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에 따르면 시·군·구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1)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기관

가) 시·군·구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사업

나) 시·군·구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다) 시·군·구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 또한 「아산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정」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및 제5조(심사요청)에 따르면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시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따라서 (재)아산문화재단에서는 2020. 12. 15. [표1]과 같이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사무용 가구 및 사무기기 구매 시 계약심사를 받고 구매해야 함에도 계약심사를 받지 않고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아산문화재단 이사장은

❍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계약심사 등의 제도를 숙지하여 심사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위탁사업 협약(계약) 체결 소홀

【부 서 명】 문화관광과, 문화유산과

【관계기관】 아산문화재단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재)아산문화재단 위탁사업비 내역(2019~2020년)[표1]

해당 부서	연도	위탁사업명	예산액(천원)			위탁기간	협약 체결 여부
			계	도비	시비		
문화 관광과	2019	은행나무길 축제	200,000	40,000	160,000	2019.10.25.~ 2019.11.03.	부
	2020	문화예술행사지원 대행사업	220,000	-	220,000	2020. 1. ~ 2020. 12.	부
문화 유산과	2020	현충사 야간개장 운영	300,000	-	300,000	2020.05.~ 2020.12.	부
	2020	외암마을민속관 문화예술공연 운영	70,000	-	70,000	2020.05.~ 2020.10.	부
	2020	외암마을저잣거리 문화공연프로그램운영	70,000	-	70,000	2020.05.~ 2020.10.	부

나. 위법·부당내용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사업을 대행(또는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체결하고 위탁계약 체결 시 사업별 위탁계약 체결 방식의 적극 활용으로 출자 출연기관의 효율적 경영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대행사업(또는 위탁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비용정산을 하고 위탁대행 사업비(수수료 포함) 수입은 사업수익의 위탁대행 사업 수입에 계상(위탁대행 수수료율은 계약체결 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문화관광과, 문화유산과에서는 (재)아산문화재단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목적, 위탁기간, 위탁대행료,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협약(또는 계약)을 체결함이 타당함에도 [표1]과 같이 협정서 등의 위탁계약체결 없이 위탁사업비 교부신청과 교부결정만으로 (재)아산문화재단에 사업을 위탁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문화관광과장, 문화유산과장은

❍ 출자·출연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별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대행 수수료율은 계약체결 시 결정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아산문화재단 이사장은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체결하고 위탁계약 체결 시 사업별 위탁계약 체결 방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장애인 중심 생활문화센터 시설 확충 보조사업 계약관리 소홀
【부 서 명】 문화관광과
【관계기관】 아산문화재단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보조금 교부 현황

-2020. 08. 20.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아산문화재단 → 문화관광과)
-2020. 09. 14. 보조금 교부 결정(문화관광과 → 아산문화재단)
-2020. 12. 14. 장애인 중심 생활문화센터 시설 확충 공사 현장 점검(문화관광과)
-2020. 12. 17. 보조금 청구서 제출(아산문화재단 → 문화관광과)
-2020. 12. 29. 보조금 지급(문화관광과 → 아산문화재단)

○ 장애인 중심 생활문화센터 시설 확충 보조사업 인테리어 공사 현황[표1]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금액(원)	공사기간	비고
2020. 10. 8.	장애인 중심 생활문화센터 (제2생활문화센터) 인테리어공사	33,200,000	2020. 10. 12.~ 2020. 12. 11.	

나. 위법·부당내용

1) 공사 원가계산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7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따라서 (재)아산문화재단에서는 장애인 중심 생활문화센터 시설 확충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에 기재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건설공사 면허 부적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공사등)에 따라 전문공사 중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이상인 공사는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따라서 아산문화재단에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등)에 따른 해당 공사의 전문면허(실내건축공사업)를 갖춘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공사면허를 갖추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3) 준공검사 미실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에 따르면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402-02)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계약상대자 선정 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 중심 생활문화센터 시설 확충 보조금 교부결정서(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행사(축제) 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와 민간자본보조를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또한「지방계약법」제17조(검사)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아산문화재단에서는 [표1]과 같이 인테리어 공사 준공 후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또한 문화관광과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설공사비 지급시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준공계 등 제반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고,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교부했어야 함에도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문화관광과장은

❍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아산문화재단 이사장은

❍ 향후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해당공사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하여 주시고,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는 등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배방생활문화센터 대관 사용료 징수 근거 미흡

【부 서 명】 문화관광과

【관계기관】 아산문화재단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배방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

- 설립연도: 2018. 6.
- 위치 및 면적: 배방읍 모산로 132-11 / 지상 2층, 연면적 446㎡
- 운영기관: (재)아산문화재단
- 주요시설: 공동체 부엌, 커뮤니티 실, 동아리실 등
- 사용료: 2시간 5,000원, 3시간 7,000원(2020년부터 징수)

·문화관광과-1137(2020. 1. 15.)「2020년 생활문화센터 운영계획 보고」中

"2018년 9월에 개관해 이용률이 저조하여 2019년은 무료로 운영, 2020년 이후에는 2시간에 5,000원 사용료 징수 계획"

※ 2020년 사용료 징수 현황: 779,387원(이자 포함)

❍ 배방생활문화센터 운영 보조금 지급 내역

연도별	보조사업명	교부액(원)	사업기간
2019	배방생활문화센터 운영	47,500,000	2019. 1. ~ 2019. 12.
2020	배방생활문화센터 운영	40,000,000	2020. 1. ~ 2020. 12.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제1항, 제14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재)아산문화재단에서는 배방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가 없음에도 문화관광과-1137(2020. 1. 15.)에 따라 2020년부터 배방생활문화센터 시설 대관 사용료로 779,387원(이자포함)을 징수하였다.

❍ 또한 문화관광과에서는 배방생활문화센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내부결재 문서만으로 (재)아산문화재단에 대관 사용료를 징수하게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문화관광과장은

❍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의 징수는 관련 조례에 근거 징수할 수 있으므로 배방생활문화센터 시설대관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에 대해 관련 조례를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관리 소홀

【부 서 명】 문화관광과

【관계기관】 아산문화재단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현황(2020. 12월말 기준)

(단위: 원)

통장잔고(A)	퇴직금 추계액(B)	과다적립액 (A-B)	적립현황		비고
			적립일	적립금액	
(보통예금) 68,535,390 (정기예금) 40,000,000 **(합계) 108,535,390**	91,702,102	16,833,288	2019. 08. 2019. 12. 2020. 07. 2020. 12.	22,088,000 22,662,170 29,615,620 23,984,200	총급여에서 일괄 12%씩 상하반기 적립

❍ 퇴직급여충당금 통장 이자 발생 및 처리 내역('19 ~'20)

이자발생일자	금액(원)	처리 내역	비고
2019. 06. 15.	36,736	2019. 12. 24. 출연금 통장으로 이체 후 사용	
2019. 12. 21.	14,830		
2020. 06. 20.	21,350	2020. 6. 23. 출연금 통장으로 이체 후 사용	
2020. 12. 19.	23,408	2020. 12. 24. 출연금 통장으로 이체 후 사용	

나. 위법・부당사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또한「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추계액에 맞추어 매분기별로 우선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재)아산문화재단에서는

- **매분기별로 퇴직금 추계액에 맞추어 적립**해야 함에도 총급여(상여금 등 포함)의 12%(임의 적용률)를 상·하반기 총 2번에 걸쳐 적립하여 2020. 12월말 기준 퇴직금 추계액 대비 16,833,288원을 과다적립하였고,
- 퇴직급여충당금 통장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출연금 통장으로 이체하여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아산문화재단 이사장은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추계액에 맞추어 매분기별로 적립하여 과다·과소 적립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퇴직급여충당금 통장 이자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도급계약 지역개발채권 징구 부적정

【부 서 명】 문화관광과

【관계기관】 아산문화재단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재)아산문화재단은 [붙임1]과 같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천만원 이상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을 하면서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징구하였다.

※ [붙임1]지역개발공채 징구 현황(2019~2020년) - 생략

나. 위법・부당사항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입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기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또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에 따르면 각종 계약 체결(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법인과의 계약 체결 포함)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 하도록 되어 있다.

대 상 별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각종 계약 체결 (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법인과의 계약 포함)	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대금공금가액의 2.5/100 (부가세제외)
	나. 물품구매, 수리·제조 계약 (다만, 가·나 공히 계약금액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대금공금가액의 1.5/100 (부가세제외)

※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단위로 계산

❍ 그러나 아산시 문화재단에서는 [붙임1]과 같이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제출토록 해야 함에도 부가세를 포함한 발행 채권 15건을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아산문화재단 이사장은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 매입시 대금공급가액(부가세제외) 기준으로 매입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부적정

【부 서 명】 문화관광과

【관계기관】 아산문화재단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재)아산문화재단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가입 내역[표1]

연도	수입원 (재정보증가입여부)	지출원 (재정보증가입여부)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가입여부)	비 고
2019	▽▽▽(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미가입)	계약담당 지출담당 지출담당 계약담당
2020	▽▽▽(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미가입)	계약담당 지출담당 지출담당 계약담당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회계법」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제1항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 또한 (재)아산문화재단 회계규정 제8조제2항에서도 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없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가입 한도를 말한다)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며, 이 경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그럼에도 아산시 문화재단에서는 [표1]과 같이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음에도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회계사고 대비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아산문화재단 이사장은

❍ 「지방회계법」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시어 회계사고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